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성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975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6.

발 의 자:정성국·김용태·김예지

서천호 · 최보윤 · 진종오

윤재옥 • 배준영 • 백종헌

유용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교원은 지식 전달과 학생 생활지도라는 업무의 특성상 높은 전문성과 자기 개발이 요구됨. 이에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을 위하여 자율연수휴직제도가 도입되었음.

한편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, 일반직공무원은 재직기간 3년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 6년마다 사용할 수 있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함.

이에 교원의 경우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자율연수휴직제의 휴직요건을 재직기간 3년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, 복직 후 6년이상 근무 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과 일반직공무원간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,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44조제1항12호 및 제45조제1항11호 개정).

법률 제 호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1항제12호 중 "10년"을 "3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6 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1항제12호에 따른 휴직(이하 "자기개발휴직"이라 한다) 후 복 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.

제45조제1항제11호 중 "하되,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한다"를 "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(휴직) ① 교육공무원이 다	제44조(휴직) ①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	
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	
다만,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	
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	
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	
야 하고, 제7호, 제7호의2 및	
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	
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	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12.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5조에	12
따른 재직기간 <u>10년</u> 이상인	<u>3년</u>
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	
습・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제1항제12호에 따른 휴직
	(이하 "자기개발휴직"이라 한
	다)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
	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
	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.
<u>⑤</u> (생 략)	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
제45조(휴직기간 등) ① 휴직기간	제45조(휴직기간 등) ①

- 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~ 10. (생 략)
- 11. 제44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한다.
- ②・③ (생 략)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11
<u>한다</u> 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